

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한신 의원 대표 발의)

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.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
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환경수자원전문위원회

한신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

의안번호 제2544호,

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」에
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

상위법령인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

법률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양방향 충전기능을 갖춘

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규정을 신설하고,

- 급속 충전시설 설치 기준이 되는 ‘전체 충전시설’을 ‘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의 최소치’로 명시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
- 또한, 충전료심의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하고 위촉위원 임기 규정 삭제와 회의 개최 방식 변경 등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.

-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